

보도시점 (전매체) 11. 13.(월) 14:00

## 벤처업계의 숙원, 복수의결권 제도 17일 시행

- 복수의결권 제도 시행에 앞서 간담회 개최...투자·청년·고용 등 현안 의견 공유
- 임정욱 실장, 복수의결권 활용 희망기업에 직접 조언하는 등 지원 의지 밝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가 17일에 본격 시행된다.

복수의결권이란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제도로,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의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도입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이와 관련해 13일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벤처기업과 투자, 청년 고용, 복수의결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생생한 의견을 나누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벤처기업의 투자유치 과정에서의 어려움, 경영권 위기를 겪은 경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등을 공유했으며,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생각(아이디어)도 제시됐다.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기회도 가졌다. 특히, 중소기업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복수의결권 제도 활용을 희망하는 기업에 직접 활용 방법을 조언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지원 의지를 밝혔다.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벤처기업의 투자유치와 청년고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이번에 시행되는 복수의결권 제도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벤처기업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약 6개월간 연구용역과 입법예고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준비 과정을 거쳤다.

담당 부서	벤처정책관실 벤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상천 (044-204-7700)
		담당자	사무관	이광윤 (044-204-7706)



□ **간담회 개요**

- (개최배경) ① 투자유치 기업의 애로 사항 청취, 복수의결권 제도 시행(11.17일)에 앞서 벤처기업 의견 공유 등 간담회  
 ② 청년세대 채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의견 청취
- (일시/장소) 11월 13일(월) 14:00 / 엘타워 5층 라일락홀
- (주 최) 중소벤처기업부
- (주 관)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
- (참 석 자) 창업벤처혁신실장, 벤처국장, 기업인(8인), 벤협(사무총장) 등 12명

□ **세부 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3	3'	■ 참석자 소개	사회자
14:03~14:10	7'	■ 인사 말씀	창업벤처 혁신실장
14:10~15:20	70'	■ 기업의견 청취 등 간담회 - 주요 벤처기업 현황 관련 의견청취 - 복수의결권 관련 Q&A	참석자 전원 (창업벤처혁신실장 & 기업인)
15:20~15:30	10'	■ 마무리 말씀 및 사진 촬영	창업벤처 혁신실장

## 참고 2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개요

### □ 복수의결권 발행 요건 및 절차

####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요건 확인 요령>

① 비상장 벤처기업일 것	- 자본시장법상 증권시장에 <u>상장되지 않을 것(비상장)</u> - 벤처기업법에 따라 <u>벤처기업 확인</u> 을 받을 것
② 창업주 요건을 갖출 것 (공동창업주)	- 벤처기업의 <u>발기인(설립자)</u> 일 것 - 발행 시점에 <u>상무에 종사하는 이사</u> 일 것 - 실형이 끝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가 아닐 것 - 마지막 투자를 받기 전까지 <u>계속하여 30%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한 최대주주</u> 일 것
③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것	- 창업 이후 <u>누적 투자 금액이 100억원 이상</u> - <u>가장 나중에 받은 투자가 50억원 이상</u>
④ 마지막 투자에 의해 창업주 의결권이 하락할 것	- 마지막 투자가 <u>지분투자(equity)</u> 일 것 - 마지막 투자로 인해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으로 하락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

항 목	내 용
① 발행자격 및 보유자격	
발행자격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
보유자격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등기이사이면서 최대주주)
② 발행요건	
발행요건 (투자요건)	누적 100억 & 마지막 5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지분희석 우려* 시 * 창업주 지분이 30%이하로 떨어지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벗어나는 경우
③ 발행한도	
존속기간	발행 후 최대 10년 한도로 유효기간을 정관에 규정
의결권 수	1주당 최대 10개 한도로 기업이 정관에 규정
④ 절차·방법	
정관개정	가중된 특별결의(발행주식총수의 3/4 동의)로 정관 개정
발행결정	가중된 특별결의로 복수의결권주식 신주 발행 * 단, '총주주 동의'시 창업주가 보유한 보통주로 납입가능

□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 행사 제한, 보고의무 등

항 목	내 용
<b>① 보통주 전환요건</b>	
일신전속	상속·양도, 이사 사임 시 보통주 전환
상장후 보통주 전환	상장 후 보통주로 전환하되 3년간 유예기간 부여
공시대상기업집단 편입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즉시 보통주로 전환
기 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시 보통주식 발행으로 간주
<b>② 복수의결권 행사 제한</b>	
행사제한 (1주 1의결권)	복수의결권 존속기간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 이사의 보수, 책임의 감면, 감사 및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자본금 감소의 결의, 이익의 배당, 해산의 결의 시 <b>1주 1의결권 행사</b>
<b>③ 특례</b>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의 특례	<b>벤처기업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유효</b> *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어서면서 벤처기업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도 유효
공개매수 및 주식 대량보유 보고 특례	복수의결권 발행 벤처기업은 <b>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 및 대량보유 보고시 의결권 기준</b> 으로 적용
<b>④ 발행의 보고 및 고시</b>	
발행보고	복수의결권 발행내용 및 중요사항 변경시 <b>중기부에 보고</b>
정관공시	복수의결권 발행기업은 <b>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내역</b> 등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 및 <b>공시</b>
관보고시	중기부는 복수의결권 발행기업 명단, 중요사항 변경 등을 <b>관보에 고시</b>
<b>⑤ 허위발행죄 및 과태료</b>	
위반행위 인지·신고	중기부는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을 경우 직권으로 조사, 누구든지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 중기부에 신고
과태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내용 허위작성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비치 및 공시의무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허위발행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복수의결권 발행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